

의안번호	제 186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5 월 31 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86
----------	-----

제출연월일 : 2019년 5 월 31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본 조례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 중단 발표('17.4.10.)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17.9.29.)하고
-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 청산종료 등기완료('18.11.13.)와 행안부의 출자기관 지정해제 고시('19.1.31.)가 게재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및 자원 조달방안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2-17 조례 제 37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출자하여 충청북도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란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물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 사업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청북도(이하“도”라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

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 2. 17 조례 제3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